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연구개발성과 확산 기반조성 및 연구성과창업에 관한 사항 >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79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총괄 검토	4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4
2. 제정안의 체계	8
3. 총괄 검토의견	10
V. 주요 항목별 검토	14
1. 제1장 총칙	14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14
나. 정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	17
2. 제2장 성과확산 체계 및 기반조성	18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5조·제6조)	18
나.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지원·성과확산 전문인력 및 성과확산 전담조직(제7조·제8조·제9조) ..	22
다. 성과확산 사업의 추진 및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근거 신설(안 제10조·제11조) ...	25
3. 제3장 연구성과창업	29
가. 연구성과창업 지원 시책 및 연구개발성과의 양도·전용실시권(안 제12조·제13조)	29
나. 연구자등의 휴·겸직 및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참여(안 제14조·제15조)	32
다. 연구개발성과의 출자, 연구개발창업에 관한 재정적 기여 및 실태조사(제16조·제17조·제18조)	35
4. 제4장 연구성과수익의 배분 및 보상 등	38
가. 연구성과수익의 배분·외부기여자에 대한 보상「이해충돌방지법」 특례(안 제19조·제20조·제21조)	38

5. 제5장 보칙	43
가. 사후감독,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비밀유지의 의무, 벌칙, 과태료(안 제22조 부터 제27조까지)	43
6. 부칙	45
가. 시행일 및 경과조치(안 부칙 제1조·제2조)	4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9. 19.

다. 회 부 일 : 2024. 9. 20.

II. 제안이유

연구개발의 과정 및 결과로 창출되는 다양한 유형¹⁾의 연구개발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이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치중하고 있어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사회·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파급되지 못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함.

특히,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 또는 연구자 직접 창업은 혁신적인 성과확산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현행 법령상 연구자의 연구 또는 외부 활동과 이와 관련한 대가의 수령 등에 있어서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과정에서 실질적 기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성과확산을 위한 민간 부문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러한 기술 중심의 성과확산에 관한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해충돌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공정한 연구성과수익의 배분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성과가 효율적으로 확산되고 연구자

1)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등,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물질, 표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

가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이에 연구개발성과의 다양한 확산활동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책무,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추진체계 구축과 기반조성, 연구개발 성과 기반 창업 및 연구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연구개발성과 수익 창출에 기여한 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동일하게 정의하고, 연구개발성과 확산활동의 유형, 연구성과창업 및 연구자창업 등의 용어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 단위의 성과확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확정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과확산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 성과확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하여 성과확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연구개발기관에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근거를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라. 연구개발성과 확산사업의 추진 근거와 더불어 확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기획·운영 및 관리 업무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별도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연구성과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 양도 및 출자 등, 연구자등에 대한 휴·겸직 및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운영 등에 대한 참여를 명시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연구성과수익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배분 방식, 기여자의 범위, 연구개발기관과 외부기여자와의 합리적인 계약 체결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겸직, 주식 등 대가의 수령, 공동연구, 연구개발성과의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등 성과확산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

IV.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현재 연구개발사업의 과정 및 결과에서 창출되는 연구개발성과²⁾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성과평가법”이라 함) 제3장(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규율하고 있음.

< 「연구성과평가법」 중 연구개발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

주요 내용	조 문
성과관리기본계획	제16조(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u>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u> (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2. 특허, 논문, 표준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1. 제품
2. 시설·장비
3. 논문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5.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 활용보고서의 원문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정보
7. 생명자원
8. 소프트웨어
9. 화합물(化合物)
10. 신제품
11. 표준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성과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과관리실시계획	제16조(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의 마련)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u>실시계획</u> (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계획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마련) 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u>연구성과의 관리·활용 계획</u> 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제18조(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u>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u> 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20조(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현행 「연구성과평가법」은 대부분의 조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중심 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를 규율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연구개발성과 결과물에 대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내용은 일부 조문(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에만 그치고 있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전반을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연구개발성과 중 하나인 특허나, 실

용신안 등이 민간부문으로 기술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경우,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고 있음.³⁾

그러나 현행 「기술이전법」에서는 특허 중심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논문이나 표준 등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성과를 포괄하지 못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사회·학술적으로 다양하게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 「기술이전법」에서는 공공연구기관에 소유권·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귀속된 기술(이하 “공공기술”이라 함)의 사업화를 위하여 기술지주회사의 설립⁴⁾과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설립⁵⁾에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의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① 공공연구기관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공연구기관과 함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자회사의 설립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출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다.

② 기술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출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술지주회사가 출자회사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기술지주회사가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기술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출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창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제정안은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연구자창업에 관한 이해충돌에 대한 사항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며, 연구성과수익의 배분과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받을 당시의 가치평가결과를 원용하여 법원에 보고할 수 있다.

2. 제정안의 체계

제정안은 제1장 총칙(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2장 성과확산 체계 및 기반조성(제5조부터 제11조까지), 제3장 연구성과창업(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4장 연구성과수익의 배분 및 보상 등(제19조부터 제21조) 및 제5장 보칙(제22조부터 제27조까지)을 포함한 총 2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정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제2장은 성과확산 기본계획·시행계획,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지원, 성과확산 전문인력·전담조직, 성과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며, 제3장은 연구성과창업·연구성과창업기업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성과의 양도·출자를 규정하고, 제4장은 연구성과수익의 배분 및 외부기여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5장은 사후 감독,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과태료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정부 등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성과확산 체계 및 기반조성	제5조 성과확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성과확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지원 등
	제8조 성과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
	제9조 성과확산을 위한 전담조직 등
	제10조 성과확산 사업의 추진 등
	제11조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설립
제3장 연구성과창업	제12조 연구성과창업의 촉진
	제13조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등
	제14조 연구자등의 휴·겸직
	제15조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운영 등에 대한 참여 등
	제16조 연구개발성과의 출자 등
	제17조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재정적 기여
	제18조 연구성과창업 실태조사
제4장 연구성과수익의 배분 및 보상 등	제19조 연구성과수익의 배분 등
	제20조 외부기여자에 대한 대가 등
	제21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제5장 보칙	제22조 사후감독
	제23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26조 벌칙
	제27조 과태료

3. 총괄 검토의견

제정안은 “성과확산”, “연구성과창업”, “연구자창업”에 관하여 정의하고 “성과확산을 위한 전담조직”, “성과확산 사업”,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전용실시권, 출자”, “연구성과수익의 배분”, “외부기여자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하여 연구개발성과가 효율적으로 확산되고 연구자 창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법 마련을 내용으로 함.

2010년 이후 공공연구기관⁶⁾의 자체 창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65건(기술지주 자회사 43건, 연구소기업 22건)에서 2020년 2,080건(기술지주 자회사 1,079건, 연구소기업 1,001건)으로 증가하였음.

< 공공연구기관 자체 창업 현황 >



출처: 대학기술지주회사협회, 과기부('21)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그러나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직접 창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로 제약을 받고 있어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연구자 창업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음.⁷⁾

제정안은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한 연구자 창업의 확대는 정부지원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기초·원천 연구성과가 기술사업화 단계로 연계되는데 소요되는 공백과 단절을 줄임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 과학기술분야 기초원천연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연구성과 중 일부 중 하나인 특허 등의 기술성숙도 고도화에 따른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기술이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제정안의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부처 간 정책조율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⁸⁾ 따라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

7)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 (관계부처 합동, '22. 12)

8) 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①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출자, 연구성과의 수익 배분, 외부기여자에 대한 대가에 관한 사항은 현행 「기술이전법」을 통해 이미 규율하고 있다는 점과 ②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공공연구자창업의 법적 근거 신설과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므로 제정안의 실익이 없다는 것임.

참고로,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의안번호 제2203295호]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음.

둘째, 제정안에서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겸직, 주식 등 대가의 수령, 연구개발성과의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등 성과확산과 관련한 행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 단서9)의 다른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¹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 금지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특례조항을 통해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이나 기술 이전 등 성과확산을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로 보이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례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정안에 대한 심사시 연구개발성과 확산의 필요성과 국가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산 투입의 산출물이라는 점에서 연구개발성과가 가지는 공적인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배제가 필요한 연구성과확산을 위해 필요한 수단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V. 주요 항목별 검토

1. 제1장 총칙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에서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확산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2. “연구개발성과”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3. “성과확산”이란 연구개발성과의 가치를 높이거나 연구개발성과의 가치가 미치는 효용 범위를 인적·물적 등으로 확장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개발성과 기반 학술활동 및 후속연구 나. 연구개발성과의 실증 및 인증 다.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출자 등 사업화 라. 산학연 협력 및 교류 활동 마. 시설·장비·데이터베이스 등 인프라적 연구개발성과(이하 “인프라 성과”라 한다)의 활용 바. 연구성과창업 및 창업 지원 사.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를 유·무형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활동

4. “연구성과창업”이란 연구개발성과가 기반이 된 창업을 말하며, 연구성과창업을 통해서 설립된 기업을 “연구성과창업기업”이라 한다.
5. “연구자창업”이란 제4호에 따른 연구성과창업 중 연구개발기관의 소속 연구자 등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창업자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기술책임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연구자창업을 통해서 설립된 기업을 “연구자창업기업”이라 한다.
6. “연구성과수익”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료와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이전 및 출자, 창업 등을 통해 발생한 기술료 외의 기타 수익을 말한다.

2) 검토의견

안 제1조는 동 제정법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요약한 것이고, 안 제2조는 “연구개발성과”, “성과확산”, “연구성과창업”, “연구자창업”, “연구성과수익”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조제3호의 “성과확산”의 개념 중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및 출자 등 사업화”에 관한 사항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기술이전법」상의 “기술이전”¹¹⁾의 개념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임.¹²⁾ 법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2)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의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출자, 연구성과의 수익 배분, 외부 기여자에 대한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미 규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를안 심사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견에 대한 조율이 필요함.

둘째, 안 제2조제3호 각 목에서 “성과확산”의 개념으로 나열하고 있는 사항 중 그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성과확산의 개념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임.

예컨대, 안 제2조제3호나목의 “연구개발성과의 인증”¹³⁾, 라목의 “산·학·연 협력 및 교류 활동”은 성과확산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마목의 “시설·장비·데이터베이스 등 인프라적 연구개발성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불명확한 것으로 보임.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의 인증에는 연구개발성과 중 제품, 시설·장비, 시험성적서 등에 대한 인증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임.

나. 정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제4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3조는 정부 및 연구개발기관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체계적·지속적 확산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유형별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확산사업의 추진 3.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활동의 지원 4. 연구성과창업 활성화 및 관련 제도의 마련 ②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가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과확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서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그 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검토의견

안 제2조제3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연구성과확산의 개념은 「기술이전법」상의 기술이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정안과 「기술이전법」간의 명확한 적용관계를 안 제4조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제2장 성과확산 체계 및 기반조성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 제5조·제6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5조는 성과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기본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조(성과확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과확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확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확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성과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성과확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성과확산 관련 산학연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연구성과창업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성과확산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확산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확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확산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성과확산에 관한 세부활동 및 대상·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성과확산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성과확산시행계

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성과확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성과확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성과확산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연구개발성과 기반 학술활동
2.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3. 인프라 성과의 활용·관리
4. 성과확산을 위한 산학연 협력
5.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구축 및 공개·활용
6. 그 밖에 성과확산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5조제1항의 성과확산 기본계획 및 안 제6조제1항의 성과확산 시행계획은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¹⁴⁾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¹⁵⁾과 내용이 자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

1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기본방향
2. 특허, 논문, 표준 등 연구성과 유형별 관리·활용 방법에 관한 사항
3. 연구성과 데이터베이스의 종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성과 관리·활용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의 마련)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대상·방법 및 일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함께 규율하는 것이 운용상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개발기관의 장을 “관계기관의 장”이라고 약칭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관계기관의 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약칭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6조제3항의 성과확산계획은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수립하고 있는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¹⁶⁾과 중복되는 것은 아니나, 함께 규율하는 것이 운용상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6조제3항 각 호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성과확산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각 호 간에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음.

-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대학 등의 연구성과 관리·활용 계획 마련) ①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이전 및 사업화(연구성과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시 제1항에 따른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계획의 마련 여부와 추진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의 관리·활용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범위 및 마련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컨대, 제1호의 “연구개발성과 기반 학술활동”와 제4호의 “성과확산을 위한 산학연 협력”은 구분이 모호하고 중복될 것으로 보임.

나.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지원·성과확산 전문인력 및 성과 확산 전담조직(제7조·제8조·제9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7조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 확산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성과확산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9조는 성과확산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7조(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 지원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성과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성과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확산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성과확산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시설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성과확산 관련 내용을 포함하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학부 과정에 성과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과정을 신설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성과확산을 위한 전담조직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관련 예산의 배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조직을 설치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8조의 성과확산 전문인력 및 제9조의 전담조직은 현행 「기술이전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과 차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¹⁷⁾

1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 시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기술평가등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이견 조율이 필요함.

둘째, 안 제9조제4항에서 “전문인력의 양성·배치”에 관한 사항은 성과확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안 제8조에서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

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성과확산 사업의 추진 및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근거 신설 (안 제10조·제11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0조는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1조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의 설립 및 출연·보조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0조(성과확산 사업의 추진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성과확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학술활동 지원 2. 연구개발기관의 후속연구 지원 3. 연구개발성과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 4. 연구개발성과창업 및 연구자창업 지원 5. 연구개발기관의 인프라 성과 확산 지원 6. 성과확산을 위한 인력교류 지원 7. 그 밖의 성과확산과 관련된 활동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확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 시 성과확산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확산 사업의 기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성과확산 체계 및 기반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2. 그 밖에 성과확산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11조(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설립) 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한 성과확산 체계 및 기반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사업화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화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기술이전법」 제15조¹⁸⁾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10조는 현행 「기술이전법」 제15조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이견 조율이 필요함.

둘째, 안 제11조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대한 설립 및 출연 근거를 신설하려는 취지인데, 현재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¹⁹⁾을 근거로 출연금을 교부받아 다음과 같이 연구성과

1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지원,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의 지원 등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관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의 집행계획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촉진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과학기술기본법」

확산 사업을 수행 중임.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수행하는 세부사업 현황>

(단위 : 억원)

세부사업명	예산		주요내용
	'23	'24	
공공연구성과활용촉진R&D	13,000	744	• 기초·원천연구 결과물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한 공공연구성과 중개연구지원(기술숙성도 향상)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	6,152	2,949	• 원천기술 또는 치안분야 연구성과를 현재 기술수준(TRL) 대비 8단계까지 현실화 및 기술고도화
공공연구성과 가치창출 기술키움	5,530	1,217	• 기초원천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시장과의 Gap을 보완하여 기술이 상용화양산될 수 있도록 지원
실험실창업지원사업	30,193	11,325	•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지원 • 실험실창업 이노베이터 육성
연구산업육성R&D	19,158	10,230	• 연구산업 성과확산 지원사업
연구재료 개발·확산 지원	4,400	296	•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한 교부가까지 연구재료 개발
기업부설연구소및원스톱서비스운영·지원	1,200	750	• 기업연구소 혁신성장 촉진 • 선도형 기업연구소 육성
차세대유망Seed 기술실용화 패스트트랙사업	4,830	7,475	•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창출된 연구성과 기술고도화 추진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5,240	8,100	• 지역 대학-출연연으로 구성된 지속가능한 학연 플랫폼 구축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26,190	19,550	•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지원, 대학기술경영 촉진 등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8,220	3,700	•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	4,800	4,000	• 지역 주도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장비산업육성	6,461	633	• 연구장비 핵심기술 개발, 제품 개발, 성능 검증, 전문기업 육성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연구장비분야전문인력양성	4,480	3,600	• 연구장비 시험분석 및 장비개발 전문 인력양성
미래선도연구장비핵심기술개발	11,702	5,140	• 미래수요와 해당 선도연구장비 개발 사이의 공백을 연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에 관한 정보의 관리·유통
2.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기관·단체와 교육기관·연구기관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전문인력의 양성
4.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인력·기술·인프라 등에 관한 교류·협력
5. 기술평가 활성화 및 기술금융 지원

6.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하고 해당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	2,000	• 미래유망혁신 분야에 대한 시장혁신(창업) 지원
국산 연구장비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2,925	• 수요 기반 국산 연구장비 고도화(스케일업) 지원 및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5,083	5,029	
합계	156,639	89,663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에서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라는 연구수행기관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3을 근거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12조²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²¹⁾

안 제11조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대한 출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한 입법 조치로 보임.

20)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21) 출연은 구체적인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교부되고 보조금에 비해 집행상 재량이 폭넓게 이용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12조의 법률에서의 근거란 연구수행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 - 법제이론과 실제, 국회 법제실, 2019, p.456

3. 제3장 연구성과창업

가. 연구성과창업 지원 시책 및 연구개발성과의 양도·전용실시권(안 제12조·제13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2조는 연구성과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2조(연구성과창업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성과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연구성과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연구성과창업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3.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또는 출자 등 4. 연구성과창업 준비, 창업 초기 및 중기 등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 5. 연구성과창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연구성과창업 생태계 조성 7. 연구성과창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창업문화 확산 8. 연구성과창업에 따른 공정한 성과 배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부 시책을 반영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자창업을 할 수 있다. ④ 연구성과창업에 관여하는 자는 연구성과창업을 통하여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연구개발성과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연구자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창업기업에게 양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양도나 전용실시권 허여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2조제3항은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등이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자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자창업은 국가 예산 투입의 결과물인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연구자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연구자창업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등록·관리 등에 대한 내용 추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둘째,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연구개발성과의 양도나 전용실시권 허여의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재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²²⁾에서 일률적으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원화된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체계와는 별도로 연구개발성과의 양도나 전용실시권 허여의 기준 및 절차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 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연구자등의 휴·겸직 및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참여(안 제14조·제15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4조는 연구성과창업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휴·겸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5조는 연구자등의 연구성과창업기업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4조(연구자등의 휴·겸직) ① 연구자등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자창업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창업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5년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자창업을 할 때 해당 연구자등이 연구자창업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그가 소속한 기관에서 재직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자등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등이 제1항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 그 겸직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제15조(연구자등의 연구성과창업기업 참여 등) ① 연구자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통해 연구성과창업기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문 2. 후속 연구개발 또는 공동 연구개발에의 참여 3.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서의 참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연구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기여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주식 등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2) 검토의견

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4조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휴직 기간을 최초 5년 이내와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타 규정에 비해 제정안에서 휴직 기간을 길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직 기간이 적절한 수준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연구자의 휴직 및 겸직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특구법」, 「기술이전법」, 「벤처기업법」, 「산학협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각각의 법에 따른 연구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기간은 다음과 같음.

< 연구자 휴직 및 겸직 허용 관련 현행 규정 >

법률	조항	설립 주체	설립 기업	휴직/겸직 허용 기타 연구자 의무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 제9조의5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산학연협력법)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법)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법)	연구소기업	연구자 휴직/겸직 허용 (3년+3년)
기술이전법	제21조의3	공공연구기관(단독 또는 공동)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연구자 휴직 허용 (기간 규정은 없음)
벤처기업법	제11조의2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학/산업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10/100 보유 의무
	제16조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벤처기업 등	7년 (창업준비기간 6개월)
	제18조의2	대학 교원 및 학생 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연구개발특구 입주 연구기관의 연구원 벤처기업의 창업자	실험실공장	설립자 퇴직/졸업 후 2년까지 실험실공장 사용 가능

법률	조항	설립 주체	설립 기업	휴직/겸직 허용 기타 연구자 의무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산학협력단(단독 또는 공동) 연구기관(단독 또는 공동)	기술지주회사	자본금 30/100 기술 현물출자 & 주식 50/100 보유 의무, 연구자 휴직/겸직 허용 (기간 규정은 없음)
	제36조의3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주식/유한)	주식 10/100 보유 의무, 연구자 휴직/겸직 허용 (기간 규정은 없음)

둘째, 안 제15조는 연구자등이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운영을 위해 자본 제공, 공동 연구개발에의 참여,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서의 참여를 할 수 있고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식 등 정당한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해 연구성과 창업을 장려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도 내에서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연구개발성과의 출자, 연구개발창업에 관한 재정적 기여 및 실태조사(제16조·제17조·제18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6조는 연구성과창업을 위한 출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는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주식·지분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8조는 연구성과창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출자 등)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성과창업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 자금 등을 출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출자, 이전 또는 창업 등을 통하여 발생한 연구성과수익 중 기술료 외의 기타 수익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성과창업기업에 대한 출자 2. 연구성과창업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출자 3. 연구성과창업 및 연구자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의 출자 4. 연구성과수익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등에 대한 보상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성과창업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출자와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재정적 기여)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성과창업기업으로부터 해당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성과창업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소속부서 등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배분 절차 및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연구성과창업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효율적인 성과확산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창업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기관 또는 관련 단체(이 조에서는 “연구개발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검토의견

첫째,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성과창업기업(제1호)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창업을 지원하는 기업(제2호) 및 연구자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제3호)에의 출자를 위하여 기술료 외의 기타 수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구성과창업을 지원하는 기업이나 투자조합에까지 기술료라는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소속부서 등을 지정하여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연구성과창업에 기여한 소속부서나 연구자등에게 그 기여한 바를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은 연구개발성과의 출자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것임을 고려할 때, 안 제16조제제1항에서 연구

성과창업의 출자 주체를 연구개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의 소속부서 등을 지정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19조제3항에서 연구성과수익이 성과확산에 기여한 연구자등 간에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연구개발기관의 소속부서 등을 지정하여 제공할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시책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 제17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시책”은 오기로 보임.

넷째, 안 제17조제2항 개별법상의 조세 및 지방세 특례 규정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²³⁾과 「지방세특례제한법」²⁴⁾에 따라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별법에서 조세특례 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직접 조세 감면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²⁵⁾

23)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 25. (생략)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25)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으로 동 조항은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삭제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4. 제4장 연구성과수익의 배분 및 보상 등

가. 연구성과수익의 배분·외부기여자에 대한 보상·「이해충돌방지법」 특례(안 제19조·제20조·제21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19조는 연구성과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0조는 외부 또는 민간 전문가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19조(연구성과수익의 배분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수익을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출자 및 이전, 창업 등에 기여한 연구자등에게 연구성과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성과수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창출 및 확산에 기여한 연구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기여자의 범위, 수익 분배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외부기여자에 대한 대가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과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부 또는 민간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하 “외부기여자”라 한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기여자를 활용한 경우에는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건으로 외부기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부기여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전용실시권 허여, 제14조에 따른 연구자등의 겸직, 제15조에 따른 연구자등의 대가 수령, 제19조에 따른 연구자등의 연구성과수익 수령 등 성과확산 관련 행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 단서의 다른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동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검토의견

첫째, 안 제19조제3항의 “기여자”의 의미가 불분명한데, 문맥상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출자 및 이전, 창업 등에 기여한 연구자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19조제3항에서는 연구성과수익 분배의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기술료’²⁶⁾는 연구성과수익의 하나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²⁷⁾에서 그 분배에 관한 사

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성과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규정 시 기존 혁신법의 기술료 분배에 관한 사항과의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안 제20조제1항은 연구성과확산을 위하여 민간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기여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기여자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연구성과확산을 수행하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외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전체 연구개발기관의 외부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한데, 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20조제3항에서는 외부기여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외부기여자의 범위는 외부기여자의 정의에 있어서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이므로 포괄적인 위임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섯째, 안 제21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겸직, 주식 등 대가의 수령, 공동연구, 연구개발성과의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행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 단서²⁸⁾

2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의 다른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²⁹⁾의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조항은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한 창업이나 기술 이전 등 성과확산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기여하는 측면이 있겠으나, 적절한 통제 수단없이 모든 연구개발성과의 이전·창업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자칫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가 거의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정안에 대한 심사시 연구개발성과 확산의 필요성과 국가 예산 투입의 산출물이라는 점에서 연구개발성과가 가지는 공적인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배제가 필요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2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성과확산을 위해 필요한 수단인지, 필요하다면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제5장 보칙

가. 사후감독,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비밀유지의 의무, 벌칙, 과태료(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1) 제정안의 내용

안 제22조부터 제27조는 이 법의 보칙을 규정한 것으로써 사후감독,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과태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제 정 안
제22조(사후감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와 제5조제3항,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 제10조, 제18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의 의무)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에 따른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2) 검토의견

안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주체는 기관이므로, “지원을 받은 자”라는 표현은 수정이 필요함.

6. 부칙

가. 시행일 및 경과조치(안 부칙 제1조·제2조)

1) 제정안의 내용

안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는 현재 설립되어 있는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2) 검토의견

동 제정안은 하위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므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9